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8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5월 24일

발 의 자 : 이병도, 김화숙, 봉양순, 김소양,
이영실, 한기영, 김경영, 김혜련,
김제리, 권순선, 김종무, 조상호,
오한아, 김용연, 서윤기, 김동식,
이정인, 오현정 의원 (18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20.4%이고, 향후 반려동물을 키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9.1%(※출처: 「서울인포그래픽스」 제227호, 2017. 3. 20.)로서 앞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세임.
- 그러나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적절한 방법이 없어 비인도적인(폐기물)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임.
- 「동물보호법」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음. 따라서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각 자치구가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과 공존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으로 하여금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27조제1항 신설)
- 나. 시장이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27조제2항 신설)

다. 시장 또는 구청장이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27조제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참조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 중 “구청장”을 “시장 또는 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의3제4호 중 “노인복지시설”을 “노인여가복지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 5호 중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28조제1항”을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제14조”를 “제16조”로 한다.

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(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이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법 제33조의3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추천을 받은 사람

5. ~ 7. (생략)

③ ~ ⑭ (생략)

제7조의3(맹견의 출입금지 등)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
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
제17조(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)

①·② (생략)

③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자치구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,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4조를 준용한다.

<신설>

구청장-----

5. ~ 7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⑭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3(맹견의 출입금지 등) 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----- 노인여가복지시설

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-----

제17조(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제16조-----
--.

제27조(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

및 운영)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이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법 제33조의3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조(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)를 신설하여 시장이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 발생하나, 공공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선례가 없을뿐더러 반려동물 화장 및 봉안(납골)에 대한 수요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설치지역에 따라 부지매입비용 등이 크게 달라지므로 비용추계 곤란
 - 제5조(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·운영)제2항제4호에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과 제7조의3(맹견의 출입금지 등)제4호에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것, 제7조의3(맹견의 출입금지 등)제5호 및 제17조(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)제3항에서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<참고>

-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사업(2018년 신규, 농림축산식품부) 경남 김해시, 전북 임실군 선정하여 추진중
 - 동물장묘시설 장례비용 부담 완화, 매립·소각으로 인한 환경 오염 예방, 유실·유기동물 사체처리 등 성숙한 동물 장묘문화 조성이 목적임
 - 개소당 설치단가 50억원 기준으로 산출 및 편성되고 국비30% 지방비70% 부담. 시·군 자체예산 추가하여 추진 가능(보조금은 화장장, 장례식장, 봉안당 공사 및 집기, 기자재 구입 등에 지출)
- 현재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 운영사례 없으나, 일부 지자체에서 국비사업신청 등 추진 준비중(보도)
- 서울시 시립장사시설 설치시 지역주민 복지예산 병행 편성(예: 체육센터 설립 등) 사례 있음
- 시립장사시설의 서울시민 이용요금은 화장120천원(성인), 봉안 및 관리400천원(15년 납골 기준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 무 관 채소영

☎ 02-2180-7944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